

## 살인 및 자살을 동반한 보험범죄 예방 방안

송윤아 연구위원

요약

-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다르고 중복가입으로 보험사고 발생 시 거액의 보험 금이 지급되는 등 범죄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약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보험회사는 보험료 수입 증대를 통한 외형 성장에 매몰되어 문제의 소지가 있는 보험계약을 인수하는 것을 자제하고 보험이 범죄의 목적이 되지 않도록 인수심사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망보험금의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법정상속인 또는 가족관계가 아닌 제3자로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대한 내부지침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전체 보험담보에 대해서 보험회사 간, 생손보 간 보험청약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함으로써 통합시스템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은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다르고 중복가입으로 보험사고 발생 시 고액의 보험 금이 지급되는 등 본질적으로 범죄에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계약 시 주의가 요구됨.
  - 살인이나 자살을 동반한 보험범죄는 대체로 재해 사망으로 가장하는 경향이 있음.
    - 살인을 재해 사망으로 가장하는 이유는 정상인을 자연적인 사망으로 위장하기가 힘들고, 보통 보험금의 지급에 있어서도 일반 사망보다는 재해 사망 시 보험금의 급부가 많기 때문임.
    - 또한 보험의 면책기간 내에 자살할 때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설사 면책기간이 지났더라도 일반 사망보다 소액의 보험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보험금이 많은 재해 사망으로 위장하는 경우가 많음.
- 그러나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은 계약 및 수익자 지정 절차가 비교적 간편하며, 보험회사마다 가입심사기준의 편차가 큼.

- 「상법」제731조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즉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망담보 보험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항은 강행법규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어떤 법에도 우선하여 적용됨.
- → 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은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만 있으면 성립하며, 사망보험금 수익자 변경의 경우우선 계약자가 신청하는 것이며, 반드시 피보험자의 동의를 필요로 함.
- 일부 보수적인 보험회사의 경우 자사에 납부하는 월 보험료가 일정 금액 이상인 가입자가 추가보험 계약을 원할 경우 재정질의서와 소득증빙서류 등을 요구하여 추가계약체결 여부를 검토하기도 함.
- 또한, 법정 상속인 또는 가족 관계에 있지 않은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 및 변경하는 절차가 비교적 간편하며. 보험 회사마다 요식의 엄격함에 있어서 편차가 큰 편임.
  - 사망보험금 수익자 변경은 계약자의 신청과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으면 제3자에게도 가능함.
  - 이 경우 일반적으로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이 아닌 제3자로 지정하는 경우 자필에 대한 입증책임 때문에 인감증명서와 인감날인을 요구하거나 자필서명과 자필동의서를 요구하기도 함.
  - 일부 보수적인 보험회사의 경우 법정상속인 또는 가족관계에 있지 않은 제3자를 사망보험금 수익 자로 지정 및 변경하기 위해서는 면담을 하거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보험금의 규모에 따라서 제3자 지정 및 변경을 제한하기도 함.
- 대 다음 보험회사 다음 보험에 가입하려는 자가 유사담보에 대해 다른 보험회사 이도 청약 또는 가입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움.
  - 현재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의 통합시스템에서는 청약 후 응낙하기까지 2~3일 가량은 조회가 안되기 때문에 청약단계에서 여러 개의 상해사망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확인이 불가능함.
  - 현재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간 정보교환이 이뤄지지 않아 생명보험회사는 사망보험에 가입하려는 자 가 손해보험회사의 어떤 보험에 가입했는지를 확인할 수 없음.
- **!!!** 살인 및 자살을 동반한 보험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보험업계는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함.
  - - 특히, 사망보험금의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법정상속인 또는 가족관계가 아닌 제3자로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대한 내부지침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전체 보험담보에 대해서 보험회사 간, 생손보 간 보험청약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합시스템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함.
- ## 소비자 입장에서도 살인 및 자살을 동반한 보험범죄의 피해가 없도록 다음과 같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첫째, 출생이나 사망, 결혼이나 이혼 또는 재혼과 같은 사유로 가족관계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미 가입한 보험관계도 정리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 둘째,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서 제공하는 보험가입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본인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보험계약을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함.
  - 셋째, 법정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지정할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 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익자 지정 시 자필서명 이외에 인감날인, 인감증명서와 같은 객관적인 서류들을 보강해야 함. kiri